

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
【자치행정과】

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미사지구 입주에 따라 2014년 12월에 미사1동·미사2동 주민센터를 개소하고 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별표 1 중 미사1동·미사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 : 생략

가. 법적근거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 및 「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제1항제5호

나. 사 유 :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협의기간 : 2015년 1월 13일 ~ 1월 16일(3일간)

나. 협의결과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9. 기타 참고사항 : 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

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미사1동 및 미사2동 주민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미사1동 주민센터	하남시 아리수로 600(망월동)
미사2동 주민센터	하남시 아리수로 531(망월동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자치행정과장 김재연
	팀장 직위 · 성명	시정팀장 박진호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정유정 (790-5388)